
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발급통지서를 교부(등기발송)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참물을 준비하여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■ 공고대상자

연 번	성 명	생년월일	세대주	주 소	발급신청기간	비 고
1	홍○서	07.04.21.	홍○남	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550번길 83-83, 1호	2024. 5. 1. ~ 2025. 4. 30.	수취인불명

■ 지 참 물 : 학생증(없을시 부 또는 모 동행), 사진 1장(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.5cm, 세로4.5cm)

■ 공고기간 : 2024. 5. 4. ~ 2024. 5. 31.

■ 문 의 처 : 장흥면 ☎ 031-8082-7653 (담당자 : 김지희)

※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2024년 5월 4일

장 흥 면 장

